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교통위원회 윤 기 섭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노원구 제5선거구 윤기섭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지난 8월 11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현행 조례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이행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‘공사시행자’로만 규정하고 있어, 발주처(예: 특수목적

법인)와 시공사 간에 책임소재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특히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, 교통소통대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시공사에도 명확히 책임을 부여할 필요 또한 있습니다.

이번 개정안에서는 ‘사업시행자’와 ‘이행 주체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,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, 실제 이행 의무는 사업시행자와 이행 주체 모두에게 부과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으로써,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.

또한, 사업시행자가 이행 주체에게 교통소통대책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,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